

## 동물 담론과 동물법 연구에 대한 성찰

-포스트휴머니즘 관점과 '동물 전환'을 중심으로-

### Reflections on Animal Discourse and Animal Law Studies

-Focus on the Posthumanism Perspective and 'Animal Turn'-

이 영 은\*

Lee, Young Eu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동물법의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 가능성 |
| II. 휴머니즘과 동물           | V. 법의 '동물 전환'            |
| III. 포스트휴머니즘과 동물 담론 성찰 | VI. 나가며                  |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법이 새로운 주체를 수용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새로운 주체를 수용한다는 것은 법이 전통적으로 이해해 오던 휴머니즘 주체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체계 이론의 이해에 따라 법 역시 체계로서 외부 환경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법의 발전은 어떤 환경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중요한 쟁점으로서 동물에 주목한다. 동물 담론은 휴머니즘 인간 주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반영하는 동물법 역시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으로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동물 담론과 동물법 연구는 권리 인정, 법인격 부여, 재산적 지위 철폐 같은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동물의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동물을 위한 새로운 정의'를 위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내부에서 순환한다는 점에서 다소 폐쇄적이며 휴머니즘 인간 주체를 유지·강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https://doi.org/10.35148/ilsilr.2026..63.87>

투고일: 2026. 3. 10. / 심사완료일: 2026. 4. 6. / 게재확정일: 2026. 4. 8.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Master's and Ph.D Integrated Program Candidate,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

‘동물을 위한 새로운 정의’는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법체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질문 이전에, 법이 전제해 온 휴머니즘 주체와 이를 중심으로 배제되었던 인간 외 존재를 복원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새로운 사유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동물 담론과 동물법 연구는 포스트휴머니즘 맥락 위에서 다시 성찰해 보고, ‘동물 전환’이라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동물 담론, 동물법, 법인격, 동물권, 포스트휴머니즘, 동물 전환

## I. 서론

최근 동물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유기 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동물법 강화와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법 체계 변혁 등 동물 보호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동물 단체는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개헌동동)’과 ‘동물은물건이아니다’ 연대 등 법 개정을 위하여 환경·여성 단체와 연대하여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People for Nonhuman Rights, PNR)가 설립되어 법정책 연구·동물법 교육·동물 학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 담론은 1970년대 철학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로 시작하였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0년대 이후 동물의 법적 지위(권리 주체)가 화두로 등장하며 동물법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계기로 1980년대 후반부터 동물 담론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90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서구의 동물 담론을 빠르게 받아들여 국내에서도 보호 및 복지를 넘어 ‘동물권’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동물 담론은 휴머니즘 인간 주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 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물 담론을 반영하는 동물법은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동물법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는 더 아름다운 세계를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이 글은 동물법이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며 현재 동물 담론과 동물법 연구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동물 담론과 동물법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를 살펴보고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휴머니즘이 동물을 어떻게 배제하였는지, 그리고 법체계에서 동물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Ⅱ), 휴머니즘의 위기와 함께 등장하는 포스트 휴머니즘과 동물 담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포스트휴머니즘 맥락 위에서 오늘날 주류 동물 담론에 대한 성찰도 함께 해본다(Ⅲ). 이어서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의 의미를 풀어보며, 오늘날 법이 새로운 주체(기계와 동물을 중심으로)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해 본다(Ⅳ).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궁극적으로 법의 ‘동물 전환’을 제안해 보는데, ‘동물 전환’은 법의 단단한 휴머니즘 장벽에 균열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V). ‘동물 전환’을 통하여 법은 외부 환경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휴머니즘의 위기 틈으로 “달려 들어오는”<sup>1)</sup> 다양한 주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Ⅱ. 휴머니즘과 동물

### 1. 휴머니즘 인간과 동물

휴머니즘은 서구의 지배적인 주체 모델을 형성해 온 사고 틀로서, 합리성과 자율성을 지닌 존재를 주체로 규율하였다. 칸트 철학으로 설명하면, 실천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만이 존엄한 주체로 승인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놓이는 ‘인간’은 유럽, 백인, 남성 중심의 매우 좁은 의미의 ‘인간’이었다. 비유럽인, 비백인, 여성 등은 ‘인간’으로서 주체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들은 종종 ‘동물’에 비유되며 휴머니즘의 ‘인간’ 바깥 영역에 배치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단순히 ‘인간’ 바깥의 외부적 존재가 아니라, 중심에 놓인 ‘인간’이 언제나 세계의 중심에서 자아와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타자라는 점이다.

휴머니즘의 인간 주체성과 존엄성의 핵심은 이분법과 변증법에 있다. 정신/육체,

1) In the ontological gap thus opened, other species come galloping in.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91쪽;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John Wiley & Sons, 2013, p. 67.

이성/감정, 문화(문명)/자연(야생)을 구분하고, 언제나 전자가 후자에 비해 우월하고 후자를 타자(성)에 위치시켰다. 이때, 타자성은 주체성의 부정적인 짝, 주체성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대응쪽으로 정의되며,<sup>2)</sup> 이러한 이분법의 구도 속에서 존재들 사이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이는 지워지고 열등함으로 환원된다.<sup>3)</sup> 타자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타자성으로 규정되며 배제와 억압이 정당화되었고, 그 결과 아주 일부 존재만이 ‘인간’으로서 주체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휴머니즘 이해는 동물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르네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의 구분을 강조하며, 신체는 사유가 필요하지 않은, ‘신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로 여겨졌다. 데카르트는 신체를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다만 인간과 동물의 핵심적인 차이는, 인간은 ‘정신’을 지닌, 즉 이성적 영혼을 지닌 반면,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데카르트에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며, 사이(“in-between”)는 없으며 일부 동물이 지능을 가진다거나 동물 중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sup>4)</sup> 동물은 마음과 영혼, 사고와 이성이 결여된 채,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움직이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근대적 동물 이해는 휴머니즘을 비로소 ‘인간 종’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육체적·물질적·기계적 존재로 환원된 동물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으며, ‘야만적’이거나 ‘짐승적’인 것으로 폄하되었다. 동물의 육체와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적이고, 위생적이고, 아름다운 문명 존재로서 정체성과 주체성을 유지하였다. 인간과 동물의 다름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위계적 차이로 강조되었고, 인간과 동물을 ‘다른 존재’가 아닌 ‘달라야 하는 존재’, ‘지배-피지배’ 혹은 ‘주체-객체’의 관계로 환원하였다. 즉, 휴머니즘은 동물(성)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해 내어 그것을 영원히 적대함으로써 인간(종)의 특별함과 우월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휴머니즘을 ‘인간(종) 중심주의’로 설명할 수 있을테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휴머니즘은 인간 종 내부에서도 다수의 존재를 ‘인간’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휴머니즘은 유럽·백인·남성 중심주의이며, 근대적 동물 이해를 통해 근대 주체는 ‘인간 종’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확장된

2) 로지 브라이도티, 위의 책, 26쪽.

3) 로지 브라이도티, 위의 책, 42쪽.

4) Krzysztof Skonieczny, “The Animal Turn as a Challenge to Humanism”, Michael Bryson, *The Routledge Companion to Humanism and Literature*, Routledge, 2022, p. 89.

것이다. 정확히는, 휴머니즘 ‘인간’이 ‘동물이 아님’이란 것을 증명할 뿐이고, 타자로 규정되었던 존재들이 온전히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의 권리는 동물의 권리에 빗대어 조롱받기도 했고, 심지어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의 권리 투쟁은 종종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통해 전개되었다.

## 2. 휴머니즘 법체계와 동물

휴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근대법은 이성적, 자율적 인간 존재를 주체로 상정하고, 그 외 존재는 개체 또는 보호 대상으로 두었다. 특히, 법체계에서 권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대표적인 법은 민법이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칸트의 인성론을 반영하여 근대 민법의 권리 주체는 인간이다.<sup>5)</sup> 법이 상정하는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이성’과 ‘자율성’을 갖추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며, 이는 헌법·형법·행정법·소송법 등 법체계의 모든 기본영역에서 반복된다.<sup>6)</sup> 사회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 주체 모델을 발전시켜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인간이 아닌 회사 등도 법인격을 받아 권리 주체가 되었다.

한편, 민법은 인간(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물건을 규정하고 이를 권리 객체로 간주한다.<sup>7)</sup>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민법 제98조에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토지, 자원은 물론이고,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동물, 식물)는 모두 권리 객체가 된다. 반대로 인간은 객체가 될 수 없다.

한편, 동물은 형법상으로도 ‘물건’으로 간주된다. 현행 형법의 해석상 동물은 ‘행위 객체’로 간주되고, 동물의 행위 객체성은 동물과 동일한 수준이다.<sup>8)</sup> 특히, 동물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행위는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다뤄진다.<sup>9)</sup>

5) 양천수,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행정법연구 제4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7쪽.

6) 양천수, 위의 논문, 7쪽.

7) 양천수, 위의 논문, 6쪽.

8) 형법에서 ‘행위 객체’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 대상을 의미한다. 주현경,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사법의 변화 모색”,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61쪽.

9) 예컨대, 타인의 동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데려가는 것은 ‘사실상의 점유 이전’으로 간주되어 절도가

그러나 동물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제8조에서 동물학대행위를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동법 제46조).<sup>10)</sup> 따라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을 함께 적용하여 상상적 경합하는 형태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학대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러한 법현실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법체계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취지와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는 점에도 비판이 제기된다.<sup>11)</sup>

### Ⅲ. 포스트휴머니즘과 동물 담론 성찰

#### 1. 포스트휴머니즘: 새로운 주체를 위한 사고 전환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한다.<sup>12)</sup> 휴머니즘은 이분법과 변증법 논리를 통하여 인간 주체를 확립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지식 세계를 열었다. 휴머니즘의 주체는 타자와의 대립을 통하여 자신의 우월성과 보편성을 보증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구조적 타자들이 휴머니즘의 경계 바깥에 놓이며 배제되고 차별받았다. 휴머니즘의 붕괴는 바로 그동안 묵살되어 왔던 타자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된다.<sup>13)</sup>

포스트휴머니즘 사회에서 인간은 더 이상 타자와의 대립과 타자에 대한 지배, 통제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와 주체 지위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세계를

---

될 수 있고(불법영득 의사가 있고 사실상의 점유를 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의 동물을 폭행, 상해, 학대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양태와 상관없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 주현경, 위의 논문, 61-62쪽.

10) 주현경, 위의 논문, 63쪽.

11) 연합뉴스, 장우리, “‘내가 잃은 건 가족인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 2020. 8.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1049900004>>, 검색일: 2026. 3. 10.

12) 윤현식,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민주법학 제76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30쪽.

13) “그 목소리들은 불가피하게 과거 휴머니즘의 ‘중심’인 지배적인 주체 포지션의 위기를 나타낸다. 그 목소리들은 반(反)휴머니즘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전혀 새로운 기획으로 나아간다.”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53쪽.

구성하고 공진화하는 관계망의 일원이 된다.<sup>14)</sup> 휴머니즘의 편협한 ‘인간’ 개념을 넘어서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체는 ‘포스트-휴먼’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휴먼’을 단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초월적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이 이해하고 정의하였던 좁은 ‘인간’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포스트휴머니즘을 향한 전환의 핵심으로서 ‘포스트휴먼 주체’의 기획을,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을 참조하여, ‘동물-되기’, ‘지구-되기’, ‘기계-되기’라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종과 범주와 영역을 재연결하는 횡단적” 과정을 시도한다.<sup>15)</sup> 특히, 들뢰즈와 가타리의 ‘동물-되기’는 전통 휴머니즘이 인간을 정의하던 어떤 외형과 기능이라는 개념을 정서, 강도, 움직임 등 경험을 통한 이해에 기반한다. 되기에는 “선행하는 정체성이나 주체가 없으며, 주체가 도달하는 정체성도 없다”.<sup>16)</sup>

즉,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새로운 주체로서 ‘포스트-휴먼’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기계, 자연 같은 인간 외 존재<sup>17)</sup>들을 포함하는 구조적 타자와 좁은 의미의 ‘인간’ 자아 사이의 경계 위에서 시작된다. 이 경계는 횡단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분법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되기’의 과정을 통해(혹은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것일 뿐 더 이상 어느 일방이 한 존재의 지위를 보증하는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의미를 휴머니즘으로부터 떼어내고, 인간과 인간 외 존재에 대한 이분법과 변증법이라는 편협한 사고 틀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경계

14) 윤현식, 앞의 논문, 31쪽.

15) 이경란,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주체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향하여”,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제12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9, 48쪽.

16) Kari Weil, “A Report on the Animal Turn”, *differences vol. 21 no. 2*, Duke University Press, 2010, p. 11.

17)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인간’은 ‘인간 종’의 축약 표현이고, 이를 제외한 모든 존재를 ‘비인간(nonhuman)’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간이 아님’이라는 의미의 ‘비인간’의 이면에는 휴머니즘적 인간 우월성을 변증법적으로 유지하는 가치 판단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라는 구분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변증법 구도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인간 외 존재(other-than-human being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동물, 식물, 기계, 자연 등 다양한 존재를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감각과 언어를 통해서만 지칭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서 ‘외’는 인간을 기준으로 한 배제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는 또 다른 존재 양식을 지닌 다양한 존재들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참조문헌이나 인용문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인간’이라는 표현 대신 ‘인간 외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를 넘나들면서 구성되는 ‘포스트-휴먼’을 새로운 주체로 사유하게 된다.<sup>18)</sup> 캐리 울프는 포스트휴머니즘을 “‘posthuman’, 즉 인간의 경계를 초월하거나 벗어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posthumanist’, 즉 우리가 철학적 습관, 정치 제도, 문화적·종교적 관습 등에서 물려받은 휴머니즘을 벗어나거나 비껴서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질문을 사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를 통해 울프는 “포스트휴머니즘의 ‘포스트(post)’가 단순히 시간적·연대기적 개념-즉 ‘그 이후에 오는 것’, 최신 학문적 유행이나 일시적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다.<sup>19)</sup>

## 2. 포스트휴머니즘과 동물 담론

### 2.1 동물 담론의 흐름

동물은 (인간) 주체의 반대로서 인간 역사 속에서 점차 배제되어 왔고, 그 배제 역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인간 주체의 형성 조건, 휴머니즘의 조건이 드러난다. 예컨대, 휴머니즘의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보편성과 우월성, 존엄성을 결정하였던 중요한 기준으로서 정신을 육체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고, 육체를 정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

이분법 아래에서 동물은 이성이 없는 육체적 존재로 간주되었는데, 동물 담론은 바로 그 육체적 존재인 동물에 주목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동물 담론은 휴머니즘과 이성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동물 담론은 단지 연구와 논의의 주제를 동물로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 휴머니즘에 대한 성찰로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파헤치고 재구성한다는 점이다.

동물 담론 내부에서도 논의의 방향성은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sup>20)</sup> 그중에서도 인간과

18) ‘포스트-휴먼’을 번역해 보자면, 이는 단순히 ‘탈-인간’이 아니라 ‘탈-휴머니즘 인간’에 가깝다. ‘포스트(post)’는 시간적 의미에서 ‘이후’와, 비판적 의미에서 ‘탈’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포스트휴머니즘 담론 속에서 이 둘은 불가분하다고 생각한다. 즉, 휴머니즘 인간 ‘이후’에 오는 인간은 곧 휴머니즘의 인간 개념을 ‘탈’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를 굳이 번역하지 않고 ‘포스트’라는 표현을 남겨두었다.

19) Cary Wolfe, “Moving Forward, Kicking Back: The Animal Turn”, *postmedieval: a journal of medieval cultural studies* vol. 2 iss. 1, Palgrave Macmillan, 2011, p. 2.

20) 동물 담론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동물을 위계적으로 구분해 온 전통까지 넓게 포함할 수 있다. 근대 이후 동물 담론에서는, 인간의 잔인함과 폭력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동물 학대를 규제할 필요가

동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는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동물 담론과 포스트휴머니즘의 밀접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감벤은 ‘인간’에 대한 사유가 언제나 ‘동물’에 대한 인식을 이면에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인간과 동물의 구분은 인간을 정의하는 일 자체이며, 인간은 스스로 인간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된다. 이 ‘인간화’ 과정에는 언제나 ‘동물화’가 전제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을 빈공간(‘예외상태’)에 두고 이를 배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유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포함된 ‘인간 아님’을 배제해야 한다. 아감벤은 이를 두고 ‘인간학적 기계’의 작동이라고 하였다.<sup>21)</sup>

한편, 데리다는 동물-타자란 인간 주체를 구성하는 결정적이고 필연적인 존재로 본다. 데리다에게 있어 동물 담론의 핵심은 ‘동물’이란 단어에 겹쳐왔던 인간중심적 의미를 벗겨내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에 확정적이라고 여겨져 온 경계를 단순히 지워 버리거나, 인간과 동물의 동질적인 연속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계를 “복잡하게 하고 두텁게” 함으로써 그 경계선 위의 차이와 이질성, 다중성이 일으키는 균열을 드러내는 것이다.<sup>22)</sup>

## 2.2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로서 동물 담론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포스트-휴먼’을 생물학적 인간이 아닌 다양한 존재와의 경계를 횡단할 수 있게 해준다. 동물 담론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사유를 배경으로 등장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포스트휴머니즘은 동물 담론 속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도 하다. 휴머니즘은 단순히 ‘인간 중’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을 배제하는 것이고, ‘비인간’에는 인간, 동물, 기계, 자연이 모두 포함된다. 동물 담론을

---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논의를 넘어 동물의 독자적인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영은, “동물권 담론의 해체 -법미학적·정신분석학적 성찰-”, 고려법학 제11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4-8쪽 참조.

21) 배제는 언제나 이미 포섭된 것에 대해 이루어지며, 포섭은 언제나 이미 배제를 전제하고 있다. 황정아, “동물과 인간의 (부)적절한 경계: 아감벤과 데리다의 동물담론을 중심으로”, 안과밖:영미문학연구 제43권, 영미문학연구회, 2017, 84-85쪽 참조.

22) 황정아, 위의 논문, 88-87쪽 참조; 남승원, “동물에 대한 사유의 전개와 가능성-짐승에서 비인간동물까지”,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22권 제3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338-341쪽 참조.

통해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흔들리고 균열이 더해지는데, 이 경계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동시에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 담론은 곧 인간과 그것을 구성하는 경계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브라이도티의 ‘동물-되기’는 “인간중심주의를 박탈하고 종을 횡단하는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데, 이는 인간이 환경에 기반을 둔 존재이며, 체현된 몸으로서 다른 종들과 공생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sup>23)</sup> 다시 말해, ‘동물-되기’를 통해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조에(zoe)와 구분되는, 안트로포스(anthropos)와 비오스(bios)로 대표되는 전통적 ‘인간’ 개념과 본성에 대한 이해 자체에 타격을 가한다.<sup>24)</sup> 요컨대, 동물 담론은 ‘포스트-휴먼’을 생물학적 인간이 아닌 다양한 존재와의 경계를 횡단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런 맥락에서 동물 담론은 포스트휴머니즘 연구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 2.3 오늘날 동물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러나 동물 담론에 대한 이런 이해와 별개로, 오늘날 주류 동물 담론이 과연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로서 전통적인 휴머니즘 사고관을 해체하고 주체를 사유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검토가 필요하다. 아감벤과 데리다, 해러웨이가 동물 담론에 중요한 사유 전환점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오늘날 동물 운동을 이끌고 동물법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은 이들이 아니다. 대신, 20세기 후반 피터 싱어(Peter Singer)<sup>25)</sup>와 톰 리건(Tom Regan)<sup>26)</sup>을 중심으로 형성된 해방론과 권리론이라는 두 축이 동물 담론에서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동물은 인간의 배려를 받아 보호와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해방론과 권리론은 동물의 고유한 이익이 존중·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23)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90쪽.

24) 로지 브라이도티, 위의 책, 88쪽.

25) 싱어는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평등의 원칙을 인간에게서 동물로 확장하고,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Tom Regan/Peter Singer, *Animal rights and human obligations*, Prentice Hall, 1976, pp. 148-162; Peter Singer, “Utilitarianism and Vegetarianism”,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9 no. 4, Wiley, 1980, p. 328; 이영은, 앞의 논문, 6-7쪽.

26) 리건은 동물이 인간과 동등하게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를 지니며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 of California Press, 2004, pp. 241-248.

그러나 이러한 동물 담론은 포스트휴머니즘과 다소 거리가 있는데, 이들은 두 가지 이유로 휴머니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에 의존한다는 점(유사성 논리), 둘째는 동물의 법적 권리 인정을 동물 담론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는 점(권리 범주 확장)이다.

### 2.3.1 유사성 논리: 동물의 인간성 발굴

유사성 논리는 휴머니즘의 주체 모델을 재강화할 위험이 있다. 동물학, 생물학, 인지과학 등의 연구 성과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 생물학적·행동적 연속성이 밝혀지고, 소통 능력, 사회성, 집단생활, 감정 표현 같은 특성이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님이 드러나면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에 따라, 근대 휴머니즘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기 위해 ‘차이’를 강조했다면, 오늘날 동물 담론은 오히려 양자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사성은 대체로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이 논리는 동물의 인간성 ‘발굴’에 가깝다. 동물의 인간적 능력과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과 유사한 동물에게 헌법상 평등 원칙을 적용하고 권리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휴머니즘 모델을 무너뜨리지 않고 표면상으로는 동물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sup>27)</sup>

더 나아가, 인간이 동물에게서 발굴하려는 인간성은 이미 동물성으로부터의 분리와 배제를 통해 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성 논리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기보다는 ‘불완전한 인간’, 혹은 ‘하위 버전의 인간’으로 위치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성 논리는 그것이 해체하고자 했던 휴머니즘을 오히려 연장·강화한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 강조는 인간성 개념을 견고히 유지되게 만들고, ‘동물성’은 여전히 배제의 대상으로 남겨둔다.<sup>28)</sup> 차이가 아닌 유사성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인간은 어떻게 동물을 위한 새로운 정의를 꿈꿀 수 있을까? 어떻게 동물이 경험하는 이익과 고통을 헤아려 다가갈 수 있을까?<sup>29)</sup>

27) Maneesha Deckha, “Critical animal studies and animal law”, *Animal L. vol. 18 iss. 2*, Joe Christensen, 2011, pp. 231-232.

28) Kelly Oliver,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imal Lessons: How They Teach Us to Be Huma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p. 32.

### 2.3.2 권리 범주 확장: 인간성을 전제하는 권리

무엇보다, 이러한 유사성 논리를 바탕으로 동물에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동물 담론의 중심이다. 그러나 권리 개념은 동물과의 분리를 전제한 ‘인간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 노예·여성·유색인종이 권리 주체임을 주장하며 외쳤던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구호는 권리가 인간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과 가장 유사한 유인원의 법인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세계적 프로젝트(피터 싱어의 “Great Ape Project”나 스티븐 와이즈의 “Nonhuman Rights Project”)는 동물이 권리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과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함을 전제한다. 권리는 인간이 ‘동물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즉, 권리 개념은 동물성을 부정하는 인간성을 전제하고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 위에서 구축된 것이다.<sup>30)</sup> 이처럼 동물 담론 내부에서조차 권리의 핵심 기준을 ‘인간성’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권리를 둘러싼 논의가 언제나 ‘경계 짓기’의 정치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권리 담론은 언제나 “누가 정상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동물은 이익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동물은 그렇지 못한가”라는 방식으로 선을 긋고, 인간성에 가까운 존재만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를 재생산한다. 다시 말해, 동물이 ‘동물’이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위 버전의 인간’으로 인정될 때에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권리는 강력한 보호 장치이지만, 그 실현 과정에서 관료 체계로의 편입이 요구된다. 즉,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대상의 특성을 정의하고 표준화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보호를 명목으로 동물의 고유한 속성과 습성, 생애 양식을 매우 형식화되고 기계적인 틀 안에 넣어 동물을 다루기 편한 상태, 관리 가능한 객체로 만든다는 점이다. 권리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존재를 납작하게 만들어 문서화된 틀 안에 가두는 모순을 지닌다.

### 3. 소결: 연장되는 휴머니즘으로서 동물 담론

오늘날 주류 동물 담론을 이끌어 가는 싱어, 리건, 프란시오니, 와이즈 등의 주장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경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권리를 가질 수도,

29) 이영은, 앞의 논문, 12쪽.

30) Kelly Oliver, *op. cit.*, p. 27.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정의 모델에 갇혀있다.”<sup>31)</sup> 그러나 정의를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이념으로 본다면, 정의는 비단 이성(옳음)과 윤리(좋은)로만 구성되지 않는다.<sup>32)</sup> 무엇보다 동물은 이미 이성적·윤리적 차원에서 정의로부터 밀려났다. 따라서 인간의 정의 모델을 동물에게 확장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동물은 인간의 틀에 가두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오늘날 주류 동물 담론이 시도하는 모든 변화의 기준과 방법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물은 여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며, 인권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와 유사한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과학적 지식이 축적될수록 더 많은 동물이 인간과 유사한 특성이 발견되고, 따라서 단계적으로 더 많은 동물이 권리 주체로 ‘편입’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선 굿기’이며 그 기준은 여전히 ‘인간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휴머니즘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sup>33)</sup>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날 주류 동물 담론은 여전히 ‘휴머니즘’이다(Animal Rights Discourse of Humanism). 다소 모순적인 이러한 동물 담론은 반쪽짜리 포스트 휴머니즘, 혹은 “인본주의자의 포스트휴머니즘(humanist posthumanism)”이다.<sup>34)</sup> 브라이도티는 이를 “탈-인간중심적 네오험머니즘(post-anthropocentric neo-humanism)”이라고 부르며,<sup>35)</sup> “탈-인간중심적 네오험머니스트”는 휴머니즘 인간에게 의미 있었던 가치들을 상위 영장류로 확장하며 휴머니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sup>36)</sup>

주류 동물 담론은 근본적으로 휴머니즘 인간을 전제로 확립되었던 기존의 체계에 대한 성찰 없이, 체계의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대로라면, 동물은 영원히 ‘세계’를 갖지 못할 것이다. 동물은 영원히 인간의 ‘세계’에 얽혀진 존재로서 ‘추가’로

31) Doris Schweitzer, “Rights of Things: A Posthumanist Approach to Law?”, *Nature and Culture* vol. 16 *iss. 1*, Berghahn Books, 2021, p. 33; Cary Wolfe, “Humanist and Posthumanist Antispeciesism”, in Paola Cavalieri, *The Death of the Animal: A Dialogu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p. 52.

32) 정의는 단지 이성적으로 옳거나 윤리적으로 좋은 것에 머물 수 없으며, 심미적 차원의 아름다움도 정의를 구성하는 한 요소임을 말하는 이상돈, 법미학, 법문사, 2008, [1] 법과 아름다움: 미학적 정의 참조; 이영은, 앞의 논문, 10쪽.

33) Kelly Oliver, *op. cit.*, pp. 28-29.

34) Cary Wolfe, *What is posthumanism?*, U of Minnesota Press, 2010, p. 124.

35)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102쪽; Rosi Braidotti, *op. cit.*, p. 76.

36) 지구 행성의 인간 거주자들과 그들의 동물 타자들 사이에 때늦은 연대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이 “연대는 종을 가로지르는 부정적인 유대 의식을 고전적이고 고결하다는 휴머니즘의 도덕적 주장들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기껏해야 양가적”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102-105쪽.

논의되는 대상일 뿐이다.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 인간 외 존재로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장에 적용되는 이론과 방법론이 여전히 휴머니즘의 사고 틀이라면, 이는 휴머니즘을 덜 가시적인 방식으로 재강화하는 것이고, 인간의 “자기 미화적 자비로움 (self-flattering “benevolence”)의 제스처”에 불과할 수 있다.<sup>37)</sup>

#### IV. 동물법의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 가능성

동물법이란,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과 동물의 다양한 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준거를 정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법에 반영하는 규범적 활동의 총체”이다.<sup>38)</sup> 혹은 동물 담론이 법에 수용된 영역을 동물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법의 방향성은 동물 담론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동물 담론과 동물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물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제정 시기(1990)는 우리나라의 동물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후 동물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각 개정 시기마다 동물 담론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쟁점들이 주요 개정 사항으로 반영되거나 또 다른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동물 담론과 동물법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동물 담론이 지닌 포스트휴머니즘으로서 잠재적 가능성을 동물법이 수용한다면, 동물법 역시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오늘날 동물 담론이 아직 휴머니즘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는 분명 동물법 연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으로서 동물법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해 본다. 그 전에 우선, 법이론의 ‘탈인간중심주의’의 가능성으로 언급되는 (법)체계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sup>39)</sup>

37) Cary Wolfe, *What is posthumanism?*, p. 118.

38) 동물법의 개념 정의와 요소를 정리하고 동물법을 분류한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 제60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320-342쪽 참조.

39) 체계 이론은 “개체와 사회의 느슨한 연결구조를 인간은 물론 그 외의 모든 존재로 확장할 수 있”고, “비-인간 존재의 법적 지위 부여”의 “가능성이 체계 이론에서” 열린다고 보는 견해로 윤현식, 앞의 논문, 37쪽.

## 1. 토이브너의 법인격화 전략

### 1.1 루만의 사회 체계 이론의 수용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은 휴머니즘 인간 주체의 해체를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는 곧 인간과 ‘비인간’ 사이 경계의 해체로 이어진다.<sup>40)</sup> 포스트휴머니즘 사유에 따라 인간 외 존재는 점차 행위 주체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이론 전반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컨대,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사회를 개별 인간이 아니라 ‘소통’으로 구성된 체계(system)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을 사회의 중심에서 걷어내고 인간 역시 하나의 체계이자 체계 바깥의 환경에 위치시킨다.<sup>41)</sup> 체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그 자체로 체계와 소통할 수 없으며, 언제나 각 체계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인격화되어야 한다.<sup>42)</sup> 루만의 체계 이론을 통해 ‘인격’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부여되는 일종의 자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 이론은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두는 휴머니즘을 해체하는 이론적 가능성을 보여준다.<sup>43)</sup>

군터 토이브너(Gunther Teubner)는 체계 이론에서 개별 인간이 아닌 ‘비인간’의 형태를 띠는 ‘집합체’나 ‘조직’의 인격화 가능성을 발견하고, 체계 이론을 법에 적용한다. 즉, 법 역시 사회 체계 중 하나이며, 법체계의 기준에 따라 소통을 귀속시키는

40) 정채연, “포스트휴먼 법담론: 탈근대적 인간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안암법학 제54권, 안암법학회, 2017, 21쪽.

41) 김연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초 놓기”, 법과사회 제5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78-80쪽.

42) 체계 이론에서 소통은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동시에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소통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계는 이를 귀속시킬 논리적 지점으로 ‘인격’을 필요로 한다. 즉, 인격이란 소통의 수신자 또는 행위의 귀속 지점을 의미하며, 소통을 특정 주체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과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인격화’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이 누군가의 행위로 귀속된다면 귀속 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으므로 소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또한 사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체계 이론에서 ‘인격화’ 개념에 대하여, Gunther Teubner, “Rights of Non-humans? Electronic Agents and Animals as New Actors in Politics and Law”,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33 iss. 4, Wiley, 2006, pp. 503-505; 양천수, “사법작용의 기능과 한계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6-120쪽 참조.

43) 양천수,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10-12쪽; Gunther Teubner, *op. cit.*, pp. 500-501.

자격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어야 합법/불법이라는 법의 이항 코드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법은 자신의 이항 코드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법체계를 자극하긴 하지만, 곧바로 법체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자극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더 이상 법체계 외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를 경우, 법체계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법인격을 인정할 가능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법인격은 체계 내부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 권 혹은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 1.2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활용

다만, 체계 이론은 고도로 발달된 소통 능력을 갖춘 인간과 사회 체계에게만 적용될 뿐, 다른 비인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sup>45)</sup>에서 아직 휴머니즘의 한계가 있다. 토이브너는 법인격의 주체가 반드시 육체와 영혼을 지닌 인간일 필요는 없고 비인간도 인격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체계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활용한다.<sup>46)</sup>

라투르는 세계가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행위에 의해서도 구성된다고 보며,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근대적 이분법을 거부하고, 사회를 인간·기술·사물·환경 등이 서로 얽혀 형성되는 ‘네트워크’로 이해한다. 라투르는 ‘행위소(actant)’ 개념을 제시하며 실제 사람과 조직에 해당하는 완전한 ‘행위자(actor)’에 수반되는 모든 인간(동형)적 전제(anthropomorphic assumptions)를 제거한다.<sup>47)</sup> 인간과 비인간 행위소는 모두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실체이며, 이들은 전략적 동맹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행위하며, 따라서 사회는 ‘하이브리드(hybrid)’ 사이 네트워크의 총체가 된다.<sup>48)</sup>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비인간 행위소는 동물, 자연환경, 기계, 인공지능 등 다양한 존재일 수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 행위소는 구분 없이 상호작용 한다.<sup>49)</sup>

44) 김연식, 앞의 논문, 81-86쪽 참조.

45) Gunther Teubner, *op. cit.*, p. 502.

46) Gunther Teubner, *Ibid.*, p. 502, 505.

47) Gunther Teubner, *Ibid.*, p. 510; 김환석, “행위자-연결망이론과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878쪽.

48) 김연식, 앞의 논문, 93쪽.

49) 김환석, 앞의 논문, 877-879쪽.

루만과 라투르의 이론은 전통적으로 ‘인간’을 유일한 주체로 보는 휴머니즘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인격화’는 주체-객체 관계를 자아-타자 관계로 바꾸며 타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아가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sup>50)</sup> 토이브너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비인간의 인격화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sup>51)</sup>

## 2.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은 포스트휴머니즘의 법적 수용이다. 정확히는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새롭게 주체로 등장할(혹은 드러날) 다양한 존재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오늘날 실제 현실에서 인간은 다양한 인간 외 존재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인간은 언제나 인간 외 존재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모이고 모여 사회를 구성한다. 토이브너의 지적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으며, 법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루기엔 환경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루만과 라투르, 토이브너의 문제의식과 이론은 인간 외 존재가 법체계에서 행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 2.1 새로운 주체 ① 기계

법은 오랫동안 휴머니즘 인간만을 주체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 외 존재는 이미 자신의 행위를 통해 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기계와 맺는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인간의 지식이나 행위 없이 전자 대리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계약의 불법행위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사이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인간 외 존재와의 관계에서 가능해지면서 법체계

50) ‘인격화’는 불확실성 자체를 완전히 지워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고, 타인의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Gunther Teubner, *op. cit.*, pp. 503-505.

51) Gunther Teubner, *Ibid.*, pp. 503-505.

에 변화가 필요해졌다.<sup>52)</sup>

특히, 최근 법학 연구에서는 사이보그, 원격매개로봇,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등 인간의 새로운 현존 방식과 비인간의 법적 지위가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sup>53)</sup> 그리고 동물 담론은 인공지능 중심의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에서 종종 주변부 논의로 등장한다.

그러나 올프의 포스트휴머니즘 이해에 따르면, 포스트휴머니즘은 단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서 ‘포스트휴먼(posthuman)’이 아니라, 휴머니즘 사고 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포스트휴머니스트(posthumanist)’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 역시 단지 인간의 새로운 현존 방식으로서 ‘posthuman’의 형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posthuman’의 다양한 존재 방식과 관계 맺음의 방식을 수용하여 기존의 휴머니즘 틀의 한계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만약 로봇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초월적 존재로서 새로운 주체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포스트-휴먼’ 법담론에 머물 수 있다.

## 2.2 새로운 주체 ② 동물

인간 외 존재가 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비단 기계와 인공지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동물 역시 이미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인간 사회와 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은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이끌었으며, 개물림 사고의 증가는 예방을 위한 규제를 불러왔다.<sup>54)</sup> 이처럼 법은 인간의 행위뿐 아니라 ‘동물’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물은 법체계의 역동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sup>55)</sup> 법체계가 동물을 물건/객체로 간주하여 그들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더라도, 일상 현실에서 동물-인간-법집행자는 이러한 법

52) Gunther Teubner, *Ibid.*, pp. 505-509 참조.

53) 정채연, 앞의 논문, 9-14쪽 참조.

54) 이영은, 앞의 논문, 1쪽.

55) 이를 “Animal Mobilegality”라고 설명하는 Irus Braverman, “Animal mobilegality: The regulation of animal movement in the American city”, *Humanimalia vol. 5 no. 1*, University at Buffalo School of Law, 2013 참조. 원문에서 ‘Animobility’라고 표현되며, ‘동물의 이동성’ 혹은 ‘움직임’으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동물 動物’을 한자로 풀었을 때 이미 ‘움직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물성’으로 번역해도 좋을 것이다. 이영은, 앞의 논문, 2쪽.

체계에 저항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냄으로써 ‘살아있는 법’을 구성한다.<sup>56)</sup>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체계에 깊숙이 내재해 있는 휴머니즘을 성찰하고 자신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동물 담론은 포스트휴머니즘 법담론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연구가 가능한 영역이 바로 동물법이다. 동물법은 동물 담론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법체계 내부로 수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동물 담론이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주류 동물 담론은 휴머니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주류 동물 담론은 동물법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리 프란시오니(Gary Francione)나 스티븐 와이즈(Steven Wise) 같은 법학자는 전형적인 주류 동물 담론 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말하고 있다.

프란시오니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유사성을 공유하므로,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가 조금이라도 의미있기 위해서는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sup>57)</sup> 그러나 동물을 물건/재산으로 간주하는 법체계 내에서 실제로 비교되는 이익은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아니라, ‘재산 소유자’의 이익과 ‘재산(으로서) 동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등한 고려가 어렵다고 비판한다.<sup>58)</sup> 즉, 그는 재산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동물 착취를 근절시킬 수 없으므로, 우선 동물에게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9)</sup>

와이즈는 기본권의 근거를 ‘존엄’으로 보고, ‘존엄’의 핵심 요소는 ‘자율성’이라고 본다. 따라서 와이즈는 욕구할 수 있고, 그 욕구를 실현하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고, 자족감을 느낄 수 있으면 실제적 자율성을 가지며, 자율성이 있다면 법인격으로서 자격이 있으며,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60)</sup> 와이즈는 ‘비인간 권리

56) 동물-인간-법집행자의 상호작용, 법의 역동성에 대하여 Irus Braverman, *op. cit.*, pp. 104-108 참조.

57) Gary L. Francione, “Animals-Property or Persons?”, in Cass R. Sunstein/Martha C. Nussbaum, *Animal Rights: 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21.

58) Gary L. Francione, *Ibid.*, pp. 116-117.

59) 프란시오니는 ‘재산이 되지 않을 이익’이 권리에 의해 보호되고, 이 권리가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도덕적·법적 인격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다. Gary L. Francione, *Ibid.*, p. 124.

60) Steven M. Wise, “Nonhuman Rights to Personhood”,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30 iss. 3,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2, pp. 1282-1283; 유선봉, “동물의 법적지위와 법인격 논쟁”, 법학논

프로젝트(The Nonhuman Rights Project)’를 창설함으로써 침팬지, 고릴라, 돌고래 등 고등 동물이 법원으로부터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sup>61)62)</sup>

### 3. 동물법 연구에 대한 성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동물법 연구는 ① 동물을 단순한 물건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민법의 비물건화 개정)와 ② 동물에게 법인격(법적 권리 주체)을 부여하자는 견해, 그리고 ③ 동물 보호를 헌법상 의무로 명시하자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sup>63)</sup>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과 법인격 인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여 동물이 인간과 동등하게 법적 보호와 존엄한 대우를 보장하려는 목표가 담겨있다. 피터 싱어와 스티븐 와이즈 등 해외 동물 담론을 이끄는 주요 인물들이 ‘The Great Ape Project’나 ‘Nonhuman Rights Project’라는 활동을 통해 대형 유인원과 일부 포유류의 법인격 인정을 위한 입법·소송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동물 담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해외 흐름을 반영하여 최근 민법 개정과 법인격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동물단체들의 다양한 캠페인과 법정정책 연구 및 제안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법의 보호 및 복지가 다른 인간 외 존재에게도 동일하게 유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전제하면서, 동물을 ‘인간의 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총 제19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337쪽.

61) Steven M. Wise, “Animal Rights, One Step at a Time”, in Cass R. Sunstein/Martha C. Nussbaum, *Animal Rights: 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9-50 참조.

62) 와이즈는 동물권이 인정되기 위한 4단계를 구분하며, 1단계는 법인격, 2단계는 법적 권리, 3단계는 사적 소송권, 마지막 4단계는 원고적격(당사자적격)이다. 우선, 1단계 법인격이 인정되어야 그다음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는지 논의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동물의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을 동물권의 내용으로 보고, 와이즈는 법원이 동물의 법인격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한다. Steven M. Wise, *Ibid.*, pp. 1280-1282. 와이즈는 이러한 변화를 입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기대하고 있는데, 커먼로 판사에게는 법률의 틈과 입법 공백에서 법과 정의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Steven M. Wise, *Ibid.*, pp. 1289-1290.

63) 김판기/홍진희,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 329쪽.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보다는, 오늘날 인간 사회가 마주한 (동물과 관련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소 수단적인 방식으로 동물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체계가 휴머니즘의 기초 위에서 어떻게 동물을 배제하거나 통제해 왔으며, 동물의 의미와 역할, 나아가 태어남(生)과 죽음(死)의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 혹은 동물을 어떤 장소와 공간에 배치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비물건화 개정이나 법인격 인정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단지 인간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똑같이 동물에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오랫동안 통제와 배제 속에서 형성되어 온 인간-동물 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동물이 물건도, 인간도 아니라는 것은 법의 선언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의 만남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동물의 주체적 지위는 동물의 고유한 존재 방식과 관계 맺음의 양식을 인정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어떤 법률에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에게 편의를 주는 것뿐이지, 동물 자신에게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 V. 법의 ‘동물 전환’

### 1. ‘동물 전환’: 언어와 정신 중심성 해체

#### 1.1 인간에서 동물로의 전환(turn from human to animal)

포스트휴머니즘 맥락에서 동물 담론과 동물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일종의 법의 ‘동물 전환’이다. ‘동물 전환’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곳곳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휴머니즘 인간 주체를 해체하는 새로운 비판적 패러다임이다. ‘동물 전환’이란 용어는, 2003년 12월 인류학자 사라 프랭클린(Sarah Franklin)이 학술대회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인간 동물과 그들의 인간(및 인문학)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설명하고 명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sup>64)</sup>

특히, “학자들과 그들의 연구 대상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서 동물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이란 표현을 사용한다.<sup>65)</sup> 따라서 동물 전환은 일차원적으로는 인간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도록 시선을 돌리는, ‘인간에서 동물로의 전환(turn from human to animal)’이란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즘이 단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연구가 아니듯, 동물 전환은 단지 인간에서 동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 1.2 휴머니즘 동물에서 포스트휴머니즘 동물로의 전환 (turn from humanism–animal to posthumanism–animal)

‘동물 전환’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영역의 여러 비판적 전환의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그중에서도 ‘언어 전환(linguistic turn)’과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언어 전환’은 언어가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 없이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유 전환이다.<sup>66)</sup> 따라서 ‘언어 전환’은 ‘존재에서 언어로의 전환(turn from being to language)’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없으면 세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언어는 오랫동안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서 동물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후 동물 연구에서는 동물도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도전해 왔다. 문제는, ‘언어 전환’에서 전제되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라는 점이다. 동물도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 역시 여전히 인간의 언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주의 패턴과 언어의 중심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위험이 있다. 이는 전형적으로 ‘인간에서 동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한 일차원적 의미의 전환이다.<sup>67)</sup>

64) Carlo Salzani, “From post-human to post-animal. Posthumanism and the ‘Animal Turn’”, *Lo Sguardo-Rivista di Filosofia N. 24*,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2017, pp. 97-98.

65) Carlo Salzani, *Ibid.*, p. 97.

66) 테리다는 이를 “언어(텍스트) 바깥은 없다(il n’y a pas de hors-texte)”라는 말로 강조하였다. Carlo Salzani, *Ibid.*, p. 101.

67) Carlo Salzani, *Ibid.*, pp. 101-102.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카리 와이일(Kari Weil)은 ‘대항언어 전환(counterlinguistic turn)’을 말한다.<sup>68)</sup> 이는 언어에서 멈추지 않고 “존재하고, 경험하며, 알아가는 다른 방식들을 인정하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sup>69)</sup> 예컨대 일상에서 인간과 동물의 소통은 반드시 언어의 의미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반려견에게 “손”이라고 말했다 때 실제로 ‘손’을 내밀더라도(반려견은 스스로 ‘발’을 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손”이라는 언어만을 통해 이뤄진 소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손”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의 말투와 목소리의 높낮이, 몸을 통한 제스처 등 다양한 비언어적 신호들이 결합된 상호작용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인간과 동물의 소통은 언어적 의미 이해를 매개로 하기보다는, 언어와 함께 작동하는 비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와이일의 ‘대항언어 전환’은 인간 언어에 대항하는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서 비언어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적 존재, 동물은 비언어적 존재이지만, 언어를 매개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는 점차 의미를 잃게 된다.

비언어적 소통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재조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항언어 전환’은 ‘정신에서 신체로의 전환(“turn to body”)’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서구 근대 철학에서 오랫동안 통제되고 비하되어 왔던 신체성과 물질성에 대해 재집중을 의미하며, 신체가 지니는 유한성과 취약성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속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윤리적 함의를 지닌다.<sup>70)</sup>

이러한 맥락에서 ‘동물 전환’은 언어를 우회하고 신체를 재조명하며 휴머니즘 사고 틀 속에서 형성되었던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sup>71)</sup> 휴머니즘 주체는 언어를 사용하는 정신적 존재로 규정되었으므로, 언어와 정신의 중심성이 해체되는 순간 주체와 타자의 명확한 구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 전환’은 인간에서 동물로의 초점 이동뿐만 아니라, 휴머니즘 사고 틀에서 구성된 ‘동물’이라는 존재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물 전환은 인간에서 동물로의 전환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휴머니즘 동물에서 포스트휴머니즘 동물로의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turn from humanism-animal to posthumanism-animal).

68) Kari Weil, *op. cit.*, pp. 9-12.

69) Kari Weil, *Ibid.*, p. 4.

70) Carlo Salzani, *op. cit.*, pp. 102-103.

71) Carlo Salzani, *Ibid.*, p. 105.

## 2. 법의 ‘동물 전환’ 의미 고찰

### 2.1 법의 언어·정신 중심성 해체

법은 규율과 훈육을 통해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였으며, 법전 형성을 통해 텍스트 중심으로 자신을 구성하였다. 즉, 법은 정신의 법이자 대표적인 상징적 규율 언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은 이미 동물을 자신의 범주 안으로 들이고 있다. 즉, 법의 동물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 전시 동물· 실험 동물· 가축 등 다양한 공간과 장소에 놓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는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계속해서 수정되고 확장될 것이다. 법은 어느 정도 인간에게서 동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법은 그들을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외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인간화’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앞서 살펴본 토이브너의 이론에 따라 동물의 ‘법인격화’의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언어와 정신 중심성을 해체하지 않은 법체계에 따라 걸러지고 재구성된 동물을 수용하는 것은 아닌가? 동물의 법인격화는 동물을 법의 주체로 인정할 여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언어와 정신이 있다고 간주되는 동물만이 비로소 법체계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분명 동물을 위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과 해석은 여전히 쉽지 않고, 특히, 동물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의 언어 중심성과 정신 중심성이라는 휴머니즘 근본 구조가 여전히 해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머니즘 맥락에서 동물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 법체계의 범주를 동물에게 확장하거나 동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휴머니즘 틀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 역시 인간에서 동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휴머니즘 동물(humanism-animal)에서 포스트휴머니즘 동물(posthumanism-animal)로 ‘동물 전환’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 2.2 인간과 인간 외 존재를 위한 전환

그러나 이러한 동물 전환이 법에서 인간의 자리를 빼앗고, 인간 혐오나 인간 소외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대신, 동물 전환은 인간 내부의 동물성과 동물 내부의 인간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사이 경계의 절대성이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유사성(연속성)과 차이(불연속성)는 언제나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sup>72)</sup>

휴머니즘 이해 위에서 그동안 ‘인간’은 언어와 정신의 측면만 강조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한 정의가 얼마나 많은 타자들을 만들고 배제해 왔는가. 그리고 그 타자의 배제와 억압은 얼마나 ‘비이성적’이었는가. 무엇보다 전통적 휴머니즘에서 동물은 ‘인간’이 ‘인간 아님’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이었고, 인간의 대표적인 절대적 타자였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성찰과 전환은 다른 인간 외 존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간 타자를 재사유하는 데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즉, 동물 전환은 동물 담론과 동물법이 인간 혐오나 인간 소외로 변질되는 위험을 막아주며, 오히려 법이 다양한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세계의 여러 중심을 인식하고 이를 연결해 줄 수 있다.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과 차이가 언제나 공존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양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과 동물은 단순히 주체-객체로 환원될 수 없을뿐더러, 지배자-피지배자, 가해자-피해자roman 환원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법의 동물 전환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획일적으로 보편화하지 않음으로써 “다종적 법(Multispecies Law)”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의 동물 전환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판이 가능하다. 동물 전환은 법이 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답하기

72) ‘On the Animal Turn’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역사학자 해리엇 리트보(Harriet Ritvo)는 동물 연구가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과 차이를 경계의 해체나 강화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얼마나 다르거나 같은지 끊임없이 되묻는 것이라고 말한다. Harriet Ritvo, “On the animal turn”, *Daedalus* vol. 136 iss. 4, MIT Press, 2007, pp. 118-122. 한편, 지리학자 웬디 휠러(Wendy Wheeler)와 린다 윌리엄즈(Linda Williams)는 ‘마음’이 인간 개인의 자의식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단, 식물, 동물, 인간을 포함하는 체계의 속성이라는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 연구는 우리의 이성 속 ‘동물의 일부’를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Wendy Wheeler/Linda Williams, “The animals turn”, *New Formations* iss. 76, Lawrence & Wishart Ltd., 2012, p. 6.

어렵다. 사실상 동물 전환은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쪽에 가깝다. 그렇다면 동물 전환보다는 동물의 권리 및 법인격 인정, 혹은 재산적 지위 철폐라는 전략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해결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물 전환이 제기하는 질문이 과연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이 전략은 “법과 정책이 법체계 및 틀 외부에서 특정 사상, 태도, 실천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에 관한 질문과 사안을 조사하고, 드러내고, 명확히 할 수 있다.”<sup>73)</sup>

또한, 루만과 토이브너에 따라 법을 체계로 이해한다면, 무엇보다 다른 체계와의 소통은 법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동물 전환은 기본적으로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이 다른 사회 체계와 지속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동물의 권리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물이 “법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74)</sup>

## VI. 나가며

일부 동물 운동가는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인간/동물’이라는 구분 대신 ‘인간 동물/비인간 동물’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거나, 동물을 ‘마리’가 아닌 ‘명’으로 세고, ‘암컷/수컷’ 대신 ‘여성/남성’으로 호명할 것을 주장한다.<sup>75)</sup> 그러나 이러한 시도

73) Marie Leth-Espensen/Måns Svensson, “Beyond law’s anthropocentrism: A sociolegal reflection on animal law and the more-than-human turn”, *Scandinavian Studies in Law* vol. 67, Stockholm Institute for Scandinavian Law, 2021, p. 45. 인용된 글에서는 ‘동물 전환’이 아닌 ‘more-than-human tur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를 직역하면 ‘인간 너머로의 전환’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흐름상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 인간 외 존재들을 함께 고려하는 사유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논문이 동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간 너머로의 전환’에 대한 분석을 ‘동물 전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74) Marie Leth-Espensen/Måns Svensson, *Ibid.*, p. 45.

75) “우리말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동물해방물결은 앞으로 동물을 셀 때 모두 ‘명’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한 명, 두 명 할 때의 명은 한자로 ‘名: 이름 명’을 씁니다. 하지만 이름 명 대신 ‘命: 목숨 명’이라고 한다면 ‘느끼는 존재’인 모두를 포괄할 수 있죠.” “인간에게 쓰지 않는 말이라면, 비인간 동물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암컷과 수컷 대신 여성과 남성, 어미 대신 어머니나 엄마, 폐사 대신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지요.” 동물해방물결, “우리말이 ‘종차별’을 부추긴다고요?”, 2021. 4. 15, <[https://donghaemul.com/story/?idx=233&utm\\_](https://donghaemul.com/story/?idx=233&utm_)>, 검색일: 2026. 3. 10. 동물권 단체 CARE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동물권 단체 CARE, “‘명’과 ‘마리’”,

가 진정으로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균열을 가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오히려 동물의 고유한 세계와 존재 양식을 지워버리는 것은 아닌가?

동물 담론과 동물법은 동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대변’한다는 것은 자칫 그의 목소리를 다시 가려버릴 위험을 내포한다. 동물 담론과 동물법은 동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물 담론과 동물법을 포스트휴머니즘 틀 안에서 사유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청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역사 속에서 배제되고 침묵 당해 온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인간 외 존재를 기존 체계에 ‘추가’하는 데 있지 않고, 기존 사고의 틀 자체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백인·기독교·유럽·남성 중심의 담론이 점차 비백인·비기독교·비유럽·여성으로 확장되어 온 역사적 과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넓히는 방식으로서 주변부의 존재들을 중심에 가깝게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지만, 결국 여전히 하나의 중심 위치 자체를 해체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sup>76)</sup> 동물을 그 반경 안으로 포함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동물이 인간 중심에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긴 하지만, 인간이 세계의 유일한 중심이라는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못한다.

인간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통제·배제·착취되어 온 동물의 삶이 더 나아지려면, ‘권리’라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통제·배제·착취를 가능하게 한 것은 동물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을 인간이 독차지한(현재 진행 중인) 휴머니즘 사고 틀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 담론과 동물법 연구는 포스트휴머니즘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동물권’과도 거리를 두는 ‘동물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동물 전환’은 인간이 유일한 세계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에 다양한 중심이 있을 수 있음을, 그리고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서 ‘인간’만을 중심으로 하는 법은 매우 불안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법의 위기로 보기보단, 그동안 단일한 기준을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2024. 12. 15, <<https://animalrights.or.kr/education/26>>, 검색일: 2026. 3. 10.

76) “To be moving animals along that radius means to show how animals are “more like” the center, which has been the NhRP’s strategy in filing writs of habeas corpus on behalf of chimpanzees.” Irus Braverman, “Law’s Underdog: A call for more-than-human legalitie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 14 no. 1, Annual Reviews, 2018, p. 132.

포장하며 다양한 인간 외 존재들을 배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증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여겨야 한다. 반성은 성찰로 이어져야 하며, 성찰은 곧 변화로 나아가야 함을 말한다. 그 성찰과 변화의 한 방법으로서 동물법 연구가 포스트휴머니즘 맥락에 걸맞는 법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법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앞으로 더 다양한 관점과 학제 간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 이상돈, 법미학, 법문사, 2008.
- Cary Wolfe, “Humanist and Posthumanist Antispeciesism”, in Paola Cavalieri, *The Death of the Animal: A Dialogu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 \_\_\_\_\_, *What is posthumanism?*, U of Minnesota Press, 2010.
- Gary L. Francione, “Animals-Property or Persons?”, in Cass R. Sunstein/Martha C. Nussbaum, *Animal Rights: 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Kelly Oliver,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imal Lessons: How They Teach Us to Be Huma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 Krzysztof Skonieczny, “The Animal Turn as a Challenge to Humanism”, Michael Bryson, *The Routledge Companion to Humanism and Literature*, Routledge, 2022.
-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John Wiley & Sons, 2013.
- Steven M. Wise, “Animal Rights, One Step at a Time”, in Cass R. Sunstein/Martha C. Nussbaum, *Animal Rights: 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 of California Press, 2004.
- Tom Regan/Peter Singer, *Animal rights and human obligations*, Prentice-Hall, 1976.

### 2. 학술지

- 김연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초 놓기”, 법과사회 제5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71-107쪽.
- 김판기/홍진희,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정 책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 323-346쪽.
- 남승원, “동물에 대한 사유의 전개와 가능성-짐승에서 비인간동물까지”,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22권 제3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325-350쪽.
- 양천수, “사법작용의 기능과 한계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99-141쪽.
- \_\_\_\_\_,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행정법연구 제4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1-24쪽.
- 유선봉, “동물의 법적지위와 법인격 논쟁”, 법학논총 제19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325-352쪽.
- 윤현식,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민주법학 제76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25-74쪽.
- 이경란,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주체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향하여”,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제12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9, 33-58쪽.
- 이영은, “동물권 담론의 해체 -법미학적·정신분석학적 성찰-”, 고려법학 제11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1-34쪽.
- 정채연, “포스트휴먼 법담론: 탈근대적 인간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안암법학 제54권, 안암법학회, 2017, 1-36쪽.
- 주현경,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사법의 변화 모색”,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57-81쪽.
-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 제60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317-364쪽.
- 황정아, “동물과 인간의 ‘(부)적절한’ 경계: 아감벤과 데리다의 동물담론을 중심으로”, 안과밖:영미문학연구 제43권, 영미문학연구회, 2017, 79-103쪽.
- Carlo Salzani, “From post-human to post-animal. Posthumanism and the ‘Animal Turn’”, *Lo Sguardo-Rivista di Filosofia N. 24*,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2017, pp. 97-109.
- Cary Wolfe, “Moving Forward, Kicking Back: The Animal Turn”, *postmedieval: a journal of medieval cultural studies vol. 2 iss. 1*, Palgrave Macmillan, 2011, pp. 1-12.
- Doris Schweitzer, “Rights of Things: A Posthumanist Approach to Law?”, *Nature and Culture vol. 16 iss. 1*, Berghahn Books, 2021, pp. 28-46.
- Gunther Teubner, “Rights of Non-humans? Electronic Agents and Animals as New Actors in Politics and Law”,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33 iss. 4*, Wiley, 2006, pp. 497-521.

- Harriet Ritvo, “On the animal turn”, *Daedalus* vol. 136 iss. 4, MIT Press, 2007, pp. 118-122.
- Irus Braverman, “Animal mobilegality: The regulation of animal movement in the American city”, *Humanimalia* vol. 5 no. 1, University at Buffalo School of Law, 2013, pp. 104-135.
- \_\_\_\_\_, “Law’s Underdog: A call for more-than-human legalitie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 14 no. 1, Annual Reviews, 2018, pp. 127-144.
- Kari Weil, “A Report on the Animal Turn”, *differences* vol. 21 no. 2, Duke University Press, 2010, pp. 1-23.
- Maneesha Deckha, “Critical animal studies and animal law”, *Animal L.* vol. 18 iss. 2, Joe Christensen, 2011, pp. 207-236.
- Marie Leth-Espensen/Måns Svensson, “Beyond law’s anthropocentrism: A sociolegal reflection on animal law and the more-than-human turn”, *Scandinavian Studies in Law* vol. 67, Stockholm Institute for Scandinavian Law, 2021, pp. 35-50.
- Peter Singer, “Utilitarianism and Vegetarianism”,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9 no. 4, Wiley, 1980, pp. 325-337.
- Steven M. Wise, “Nonhuman Rights to Personhood”,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30 iss. 3,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2, pp. 1278-1290.
- Wendy Wheeler/Linda Williams, “The animals turn”, *New Formations* iss. 76, Lawrence & Wishart Ltd., 2012, pp. 5-8.

### 3. 자료집

- 김환석, “행위자-연결망이론과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873-886쪽.

### 4. 신문기사

- 연합뉴스, 장우리, “‘내가 잃은 건 가족인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 2020. 8.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1049900004>>, 검색일: 2026. 3. 10.

### 5. 웹자료

- 동물권 단체 CARE, “‘명’과 ‘마리’”, 2024. 12. 15, <<https://animalrights.or.kr/education/26>>,

검색일: 2026. 3. 10.

동물해방물결, “우리말이 ‘종차별’을 부추긴다고요?”, 2021. 4. 15, <[https://donghaemul.com/story/?idx=233&utm\\_](https://donghaemul.com/story/?idx=233&utm_)>, 검색일: 2026. 3. 10.

[ Abstract ]

## Reflections on Animal Discourse and Animal Law Studies

-Focus on the Posthumanism Perspective and ‘Animal Turn’-

Lee, Young Eun\*

In front of the age of posthumanism, it is unavoidable that the law accepts new subjects. It means to move beyond the meaning of the ‘humanism-subject’ that has traditionally assumed, and it by no means an easy undertaking. If, as system theory suggests, law is ‘system’ that can reproduce and maintain itself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environment, then the development of law in the age of posthumanism depends on ‘what kind of’ environment it communicates with and ‘how’ to communicate with them.

In that animal discourse originates from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humansim-subject’ concept, the discourse is closely related to posthumansim. Correspondingly, Animal law also holds potential as a form of posthumanism of legal discourse. However, the recent discussions in animal discourse and animal law studies have still remained limited to issu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animal rights, the attribution of legal personhood, and the abolition of animals’ status as property. Although these debates seek to improve the status of animals and thus pursue a “new justice for animals”, they remain somewhat closed insofar as they circulate within the legal system itself, and therefore risk maintaining or even reinforcing the humanist subject.

A “new justice for animals” should begin not merely with questions raised with the legal system-such as how animal rights would be recognized- but with a new mode of thinking that revisits the ‘humanism-subject’ presupposed by law, restores the other-than-human beings that have been excluded by it, and reconsiders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Based on such critical awareness, this article reexamines the animal discourse

---

\* Master’s and Ph.D Integrated Program Candidate,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

and animal law with the broader framework of posthumanism and emphasis the need for an “animal turn” that is understood as a fundamental shift in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Key Words] animal discourse, animal law, legal person, animal rights, posthumanism, animal turn